

지정번호 제 호

교육훈련기관 지정증

1. 기관명:
2. 소재지:
3. 대표자 성명:
4. 지정 분야:
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43조제1항,
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
위 기관을 _____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
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